

유럽 주요국의 전파사용료제도 현황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이승훈
(T. 570-4491, sky@kisdi.re.kr)

1. 서론

무선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파는 필수적이고 희소한 유한자원이다. 이동통신의 성장과 더불어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희소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무선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3G 시장의 불확실성, 투자비용 부담 및 기술적 환경 미비로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시기를 연기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의 3G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커버리지 규정완화, 면허기간 확대, 전파사용료 감면 등 기존의 면허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전파사용료제도 운영현황과 EU 지침(Directive)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럽 주요국의 전파사용료 현황

일반적으로 전파사용료는 크게 면허부여 및 전파관리 등과 관련된 행정적 관리비용과 희소한 주파수 자원에 대한 이용대가의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시 행정적 관리비용은 면허부여 비용, 전파 관리비용(직접비용), 간접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EU는 2002년 3월에 통신서비스 관련 5개의 신규 규제지침¹⁾을 발표하였으며, 신규 지침은 2003년 7월부터 EU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5개의 지침 중에서 Authorisation Directive

1) Framework Directive, Access and Interconnection Directive, Authorisation Directive, Universal Service Directive, Communications Data Protection Directive

(Article 12, 13)는 전파사용료와 관련이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행정적 관리비용(administrative fee)으로는 종합 인증, 사용권 및 관련 규정의 관리(management), 조정(control)과 집행(enforcement)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administrative cost)을 충당해야 하며, 규제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적 조정, 조율, 표준화, 시장분석, 감시활동과 시장 조절을 위한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은 주파수 자원에 대한 최적 사용을 위해 주파수 사용권 또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EU 지침에 의하면 각국은 면허의 발행 및 전파관리의 직·간접적인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을 충당하기 위한 행정적 관리비용(administrative fee)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주파수와 같은 희소자원에 대한 이용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주파수 이용대가(spectrum charge)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유럽 주요국의 행정적 관리비용 분류현황

구 분	중분류	세분류
행정적 관리비용	면허부여 비용	면허부여 비용 면허 규정 집행 비용(면허조건 수정 포함)
	전파관리 비용(직접비용)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표준 활동 개별 및 사적인 이동 무선국 면허부여 간섭관리를 위한 조정(coordination) 면허조건 및 규정의 실행 전파 정책
	간접비용	전파이용자 편익을 위한 신기술 R&D 시장 감시 공공 관계(public relation) 전국 데이터베이스 관리 인력 관리

자료: Aegis Systems, "Study on administrative and frequency fees related to the licensing of networks involving the use of frequencies", 2001. 11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주파수 면허부여와 관련된 직접비용은 부과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면허 비용에 포함하여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전파관리의 직·간접비용과 주파수의 이용대가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여부, 부과 대상 서비스, 비용의 구분에 따라 〈표 2〉에서 처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2〉 유럽 주요국의 전파사용료제도 현황

부과 범위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부여 직접비용 부과 •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전파관리 직·간접비용만을 부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부여 직접비용 부과 •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전파관리 직·간접비용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대가 부과 • 전파관리 비용과 이용대가의 구분이 있음 	덴마크,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부여 직접비용 부과 • 일부 서비스(주로 Mobile과 WLL)에 대해 주파수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전파관리 직·간접비용을 부과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부여 직접비용 부과 • 모든 서비스에 대해 주파수 이용대가를 부과 • 전파관리 비용과 이용대가의 구분이 없음 	스페인, 프랑스, 영국

자료: Aegis Systems, "Study on administrative and frequency fees related to the licensing of networks involving the use of frequencies", 2001. 11을 기초로 작성함

3. 결 론

유럽 각국의 전파사용료제도 운영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허부여의 직접비용과 전파관리의 직·간접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희소한 주파수 자원에 대한 이용대가도 모든 서비스에 부과하는 국가도 있으나, 아직은 많은 국가들이 일부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파사용료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EU의 Authorisation Directive에서는 각국의 규제기관은 부과되는 행정적 관리비용과 징수되는 전체 금액에 대한 연간 개요(overview)를 발표해야 하고, 이 두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정(adjustments)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파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지침에 따라 모든 서비스에 전파관리 직·간접비용을 부과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매년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 전파사용료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서비스 또는 모든 서비스에 전파관리 비용을 포함해서 주파수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전파관리 직·간접비용과 주파수 이용대가 부분이 분리되어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1] Aegis Systems, "Study on administrative and frequency fees related to the licensing of networks involving the use of frequencies", 2001. 11
- [2]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uthoris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Authorisation Directive), 2002. 3

영국의 이동전화시장 현황

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고창열
(T. 570 - 4492, go2286@kisdi.re.kr)

1. 개요

영국은 2003년 하반기부터 통신서비스에 적용할 새로운 규제들을 마련하였다. 이 규제들의 기본골격은 유럽전역의 통신규제를 조화시키며,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유효경쟁환경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에 기반한 5개의 신규 EU통신지침(EU Communications Directives)¹⁾이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Oftel을 포함한 EU의 규제기관들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따른 적절한 규제를 수행하기 위해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Oftel은 지난 2003년 4월 11일, 이동전화 도매서비스²⁾와 관련한 시장에 대한 평가 자문서를 발표³⁾하였고, 여기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수준이 향상되어 시장지배적사업자(SMP: significant marker power)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접속 및 발신시장과 관련한 이동전화시장에 대한 SMP 관련 규제는 모두 풀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⁴⁾

-
- 1) "EU의 새로운 접속지침과 국내 상호접속제도의 비교"(유기주·김종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5권 3호 통권318호, 2003. 2. 17) 및 "Oftel,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한 신규제 가이드라인 제시"(이지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호 통권317호, 2003. 2. 3) 참고
 - 2) 도매서비스(Wholesale services)란 최종소비자보다는 서비스제공사업자에 의해 사고 팔리는 서비스를 말함
 - 3) Oftel, "Review of competition: mobile access and call origination", 11 April 2003
 - 4) 여기서 의미하는 이동전화시장은 이동전화착신 도매시장과는 분리된 시장을 의미하며, 이동전화 착신시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